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[별지 제2호서식]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심의일자	2026. 1. 27.
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√] 기타
건축주	㈜디씨알이
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		
	지번 587-53	관련지번 외 2필지	
	대지면적 - 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, 자연녹지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,435.83 ㎡	건폐율 - %	층수 지하 : 지하1층 / 지상4층
	주용도: 공장	구조: 철골조, 연와조, 철근콘크리트조	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 19.25 m	용적률 - %	연면적 합계 5,204.75 ㎡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해 체)분야	○ 해체 대상 건축물의 기록화 사업을 근거로 특화된 아카이브가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. ○ 터파기 경사도 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(장비 진입부 경사는 별도 표기) ○ 건축물 (건축자산) 보전 및 활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의견을 확인하여 진행할 것 (역사 기록화 작업 등 확인) ○ 지하 굴착에 따른 굴착 단면도를 별도로 제시하여 굴착에 대한 임시 사면의 경사구배가 표현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 할 것 ○ 다짐도 95% 기준 수정 및 다짐관리 방안을 별도로 명기하고 품질 시험 시기, 횟수 등을 상세히 제시할 것
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[√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-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-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
-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
-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[별지 제2호서식]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심의일자	2026. 1. 27.
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√] 기타
건축주	안덕경
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		
	지번	148-61	관련지번	
	대지면적	330.6 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일반상업지역, 방화지구, 과밀억제권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248.2 ㎡	건폐율 75.08 %	층수 지하 : 지하1층 / 지상5층
	주용도:	근린생활시설	구조: 철근콘크리트조	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	14.5 m	용적률 351.42 %	연면적 합계 1,241 ㎡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해 체)분야	○ 슬라브 컷팅 시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철저한 안내사항을 기재할 것 ○ 상부 슬래브 커팅 시 안전고리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기할 것(현재 2지점은 컷팅되는 슬래브 중앙에도 표기되어있음) ○ 사전의견 조치계획과 같이 구조 보강 선 반영 후 해체공사를 진행 할 것 ○ 2층 바닥 외부 보에 셔터박스로 인하여 보 위치가 맞는지 확인할 것 ○ 구조 보강 부분에 대하여 유의할 것 (보강공사 후에 슬래브 해체→ 승강기 설치→ 철골 공사 후 지하층 RC공사 진행)
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[√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-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-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
-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
-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
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[별지 제2호서식]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심의일자	2026. 1. 27.
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√] 기타
건축주	김주익
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		
	지번 403-42	관련지번	
	대지면적 221 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, 방화지구, 상대보호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77.85 ㎡	건폐율 80.48 %	층수 지하 : 지하1층 / 지상4층
	주용도: 근린생활시설	구조: 철근콘크리트조	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 11.85 m	용적률 250.97 %	연면적 합계 629.68 ㎡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해 체)분야	○ 해체 공사 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공사관리 및 감리를 이행할 것 ○ 지하층의 경우 상부 잔재물 및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출을 완료하고 양질토로 성토할 것 ○ 지하층 기초판 잔여길이를 최소화 할 것(추후 공사 고려) ○ 지하층 폐기물을 제거 후 되메우기 할 것 ○ 도로변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하고, 인접건물에 피해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할 것 ○ 조치계획서 18번에서 제시된 안전 비계의 근입깊이를 구조계산서를 통해 명확히 제안할 것. ○ 지하층의 저판 존치 시 신축 구조물 간섭이 발생되므로 저판과 벽체를 옹벽개념으로 검토하여 범위를 결정할 것 ○ 지하층 다짐 시 양질토사 품질규정을 제시하고 다짐높이, 다짐도 등을 규정에 맞게 제시할 것
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[√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-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-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
-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
-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
 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[별지 제2호서식]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심의일자	2026. 1. 27.
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√] 기타
건축주	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
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		
	지번 131-6	관련지번	
	대지면적 9,366.50 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, 청사, 소류1·2류, 과밀억제권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,608.88 ㎡	건폐율 - %	층수 지하 : 지하1층 / 지상2층
	주용도: 교육연구시설(학교), 근린생활시설	구조: 철근콘크리트조, 세멘블록조, 연와조	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 15.10 m	용적률 - %	연면적 합계 3,808.24 ㎡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해 체)분야	○ 연결통로 구간 해체순서(수평재, 수직재) 부재별로 상세히 작성 및 안전계획을 수립할 것 ○ 연결통로 부위에 대하여 세밀한 해체계획안을 제출 할 것 ○ 기록화작업에서 제시되는 가치가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재활용을 고려한 해체 계획을 제시할 것 ○ 비산망지망 계획의 개선안을 검토할 것 ○ 옹벽구조물과 부속건물 기초의 간섭을 확인 후 기초 철거를 진행할 것 ○ 비계 근입깊이 산정의 구조계산이 오류가 있으므로 주변 마찰력과 선단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로 검토할 것 ○ 소음 및 진동관리가 가능토록 평면도에 위치 및 횟수 등을 상세히 제시할 것 ○ 잔재물 위로 장비가 올라가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것. ○ 해체 시 발생되는 잔재물을 활용하는 경우 품질관리, 다짐관리, 안전관리의 상세한 방법을 제시할 것 ○ 장비 탑재를 위한 임시램프는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재료로 사용하고, 현장 발생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관리계획에 따라 반출처리하여 임시구조물로의 전용 또는 재사용을 금지할 것
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[√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[별지 제2호서식]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심의일자	2026. 1. 27.
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√] 기타
건축주	손상근
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		
	지번 86-14	관련지번 외 2필지	
	대지면적 1,105.1 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, 방화지구, 과밀억제권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784.44 ㎡	건폐율 70.98 %	층수 지하 : 지하1층~지상10층 / 지하1층~지상8층
	주용도: 숙박시설	구조: 철근콘크리트조	건축물 동수 2 동
	최고높이 34.2m / 26m	용적률 429.07 %	연면적 합계 4741.75 ㎡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해 체)분야	○ 해체 시 적용되는 흙막이 가시설의 설계가 초안으로 보여지므로 보완된 흙막이 가시설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및 전문기술자(토질 및 기초기술사)의 날인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○ 상부층 해체 시 발생되는 폐기물이 지하층으로 바로 투하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 방안을 상세히 수록하여 제시할 것 ○ 흙막이 가시설 설계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. ○ 폐기물 투하구 주변의 안전시설물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. ○ 폐기물이 1층으로 내릴 때 충격방지 및 작업자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에 주의하여 공사할 것 ○ 잔재물 투하 시 소음 및 진동 저감계획 및 낙하물에 따른 안전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

심의결과	[ ] 원안 의결 [√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-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-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
-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
-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
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